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인권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과 강원인권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인권침해조사과 소관업무 일부를 기획조사팀 소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차별조사1과 소관업무 일부를 장애차별조사2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기관(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을 “기관 중 구금·보호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방문조사 실시”를 “방문조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관(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제9조의2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별표 2 중 총계 “205”를 “204”로 하고, 일반직 계 “200”을 “199”로 하며, 행정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주사보 “31”을 “3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206”을 “205”로 하고, 일반직 계 “201”을 “20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49”를 “5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25”를 “24”로 하며,

행정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4”를 각각 “4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4”를 각각 “4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5”를 “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및 소속기관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침해조사국) ① ~ ③ (생략)	제9조(침해조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u>기관</u>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은 <u>제외한다</u>)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 <u>기관</u> <u>중 구금·보호시설</u> ----- ----- -----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u>방문조사 실시</u>	6. ----- <u>방문조사</u>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u><신설></u>	9.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u>기관</u>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에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05	204	-1
·	·	·	
·	·	·	
일반직 계	200	199	-1
·	·	·	
·	·	·	
행정사무관	46	47	+1
·	·	·	
·	·	·	
행정주사보	31	30	-1
·	·	·	
행정서기보	11	10	-1
·	·	·	
·	·	·	

	<u>다른 기관은 제외한다</u>)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 ③(생략)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삭 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06	205	-1
·	·	·	
·	·	·	
일반직 계	201	200	-1
·	·	·	
·	·	·	
행정사무관	49	50	+1
·	·	·	
·	·	·	
행정주사보	25	24	-1
·	·	·	
행정서기보	11	10	-1
·	·	·	
·	·	·	

[별표 3]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4	43	-1
일반직 계	44	43	-1
·	·	·	
·	·	·	
행정서기보	5	4	-1

[별표 4]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4	43	-1
일반직 계	44	43	-1
·	·	·	
·	·	·	
행정서기보	5	4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